

2020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
환수법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목 차



| | | |
|-----------|--------------|----|
| 01 |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 2 |
| 02 | 부정청구등 유형 | 10 |
| 03 | 부정이익등 환수 | 12 |
| 04 | 제재부가금 부과 | 15 |
| 05 | 명단공표 | 18 |
| 06 | 부정청구등 신고 | 20 |
| 07 | 신고자 보호 | 23 |
| 08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27 |



1.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이란? (법 제2조제4호)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 : 16,828개('20. 12월 기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 제2조제5호)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 요건 ① 과 ② 모두 충족

-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 법령 또는 자치법규
- ② 대상 :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 | | |
|---------------------|--------------------------|
| 01. 310-01 손실보상금 | 11. 340-03 해외자본이전 |
| 02. 310-03 포상금 |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
| 03. 310-04 기타보전금 | 13. 350-02 사업출연금 |
| 04. 320-01 민간경상보조 |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
| 05. 320-05 이차보전금 |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
| 06. 320-06 구호 및 교정비 |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
| 07. 320-07 민간자본보조 |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
| 0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
| 0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19.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
| 10. 340-01 해외경상이전 |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 등 |

지방자치단체 소관

- | | |
|-------------------------|---------------------------|
| 01. 301 일반보전금 |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 0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 03. 303-01 포상금 | 13.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04. 306 출연금 |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 05. 307-01 의료 및 구료비 | 15. 308-09 예비교육성지원경상보조 |
| 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16. 310-01 국외경상이전 |
| 0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0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09. 307-08 이차보전금 |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20. 403-03 예비교육성지원자본보조 |

교육자치단체 소관

- | | |
|--------------------------|---------------------------|
| 01. 310-01 보상금 |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 02. 310-03 포상금등 |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 03. 320-01 민간보조 |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 04. 320-07 이차보전금 |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 0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
| 06. 340-01 해외경상이전 |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
| 07. 350 출연금 |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
| 0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20.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
| 09. 620-01 인건비지원 | 2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
| 10. 620-03 목적사업비 | 2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
|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2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

📌 적용범위

-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부칙 <법률 제16323호, 2019. 4. 16.>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의 환수, 제9조의 제재부가금,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3조의 조사, 제15조의 이의신청, 제16조의 명단 공표,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 특히,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의 환수 및 제9조의 제재부가금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례

Q1

누리과정지원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누리과정지원금은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누리과정지원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만5세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 보육료 등

Q2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사규)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3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나요?

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Q4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받나요?

아니요,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 청구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므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다른 법률에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부정청구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 처분, 명단공표 규정이 있어 이법에 따라처분이 가능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은 적용이 배제되나요?

아니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정 환수법 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 기록관리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Q6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한 기관과 교부받은 기관의 관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목적사업비의 경우, 목적사업비 자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등이 일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학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8

민간위탁금도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제반 비용으로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은 사무 위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등의 성격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Q9

기금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도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기금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에서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 등의 재원(財源)이 민간 이더라도 공공재정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입니다.

2. 부정청구등 유형



㉠ 부정청구등 (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과 부정수익자 (법 제2조제7호)

-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을 말합니다.
-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단,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사례

Q1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실제 근로하지 않고 공공재정 지급금인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공립 또는 사립학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나요?

네, 공립 또는 사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만 제외하고 있어 각급 공립 또는 사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Q3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국·공립학교 처럼 부정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정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부정수익자 제외대상인 교육청(교육자치단체)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부정수익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공공기관이 감사를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개별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3. 부정이익등 환수



⊗ 부정청구등 금지·지급중단 (법 제6조·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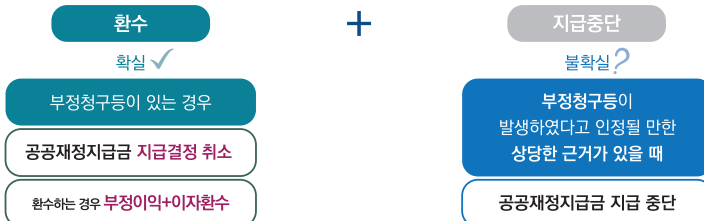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를 환수합니다.
 - 이자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이 때의 이자율은 '20년 3월 기준 연 1.8%'에 해당합니다.
-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행정청이란? (법 제2조제2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사례

Q1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중복지급 하는 등 부정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오지급의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네, 이자를 부과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 이익 가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0.3.기준, 연 1.8%)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Q2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Q3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직유관단체는 개별법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위탁이 없어도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네,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권한을 가지는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Q4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9조)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 부정청구 유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
| 부정청구 유형 | 내용 | 부과율 |
| 허위청구 (제2조제6호가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x 5배 |
| 과다청구 (제2조제6호나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x 3배 |
| 목적외사용 (제2조제6호다목) |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x 2배 |
| 오지급 (제2조제6호라목) |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미부과 |

다만, ①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이거나 ②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별표1)

⑩ 제재부가금 감면 (법 제10조)

- 환수를 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 전)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 후)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합니다.

⑪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법 제11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과거 3년간의 누적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③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Q1

「OO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은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이므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언적으로도 「한부모가족지원법」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네,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Q3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나요?

네,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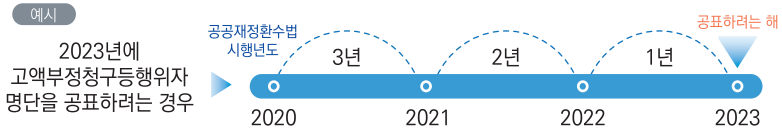
5. 명단공표



☁ 명단공표 (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해야 합니다.

- ①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 ②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 이 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와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 ①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②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③ 공표 대상자가 소멸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④ 공표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①부터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례

Q1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명단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부터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2021년에도 명단공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명단공표를 해야 합니다. 명단공표의 요건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가 있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명단 공표를 해야 합니다. 2020년만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에 따라 부정청구등 관련 규정은 법 시행(2020. 1. 1.)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부정청구등 신고



⊙ 부정청구등 신고 (법 제17조)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③ 그 감독기관 ④ 감사원 또는 ⑤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신고 방법 (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청구등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Q1

**신분노출이 꺼려져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정청구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Q2

**공익신고처럼 부정청구등
신고도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정청구등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부정청구등 신고를 공직유관
단체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나요?**

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공직 유관단체도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 청구등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 위원회를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Q4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사유가있다면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네, 허위신고 등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환수법 제24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③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⑤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⑥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⑦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⑧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7. 신고자 보호



⊗ 신고 방해 등의 금지 (법 제18조)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① 환수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의 자진 신고
 - ② 부정청구등 신고
 - ③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④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법 제20조)

- 누구든지 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신분보장 (법 제19조)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단체·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자등의 신변보호 (법 제21조)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책임감면 (법 제22조)

-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등의 위법 행위로 인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례

Q1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공개·보도하는 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컨대 외부 압력에 의해 신고내용을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Q2

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알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신고 내용만으로도 신고자등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Q3

부정청구등 신고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합니다.



8. 신고자 보상 및 포상



④ 보상금 (법 제23조제2항)

- 신고자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30억원이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따른 금액)의 30%입니다.

④ 포상금 (법 제23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③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례

Q1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또는 구제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 산정시 ①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②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④ 신고자가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Q3

부정청구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Q4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중 어느 기관에 부정 청구 신고를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 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020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
환수법